



제429회 국회 (정기회)
제14차 행정안전위원회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독립훈장 신설 및 친일반민족행위자에 대한 서훈 취소〉
■ 신장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2179호)

2025. 11.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독립훈장 도입 및 서훈취소 특례조항 신설	2
2. 친일반민족행위자에 대한 서훈 취소	8
3. 기타 신설 규정	1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신장식의원 등 12인
2. 제 안 일 : 2025. 8. 14.
3. 회 부 일 : 2025. 8. 1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 훈장(勳章) 및 포장(褒章)은 대한민국 국민이나 우방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에 뚜렷한 공적(功績)을 세운 사람에게 공적 내용, 공적이 국가와 사회에 미친 효과의 정도, 그 밖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여함. 그 중에 건국훈장은 대한민국의 건국에 공로가 뚜렷하거나, 국가의 기초를 공고히 하는 데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함.

이에 따라 독립유공자에 대하여 건국훈장이 수여되고 있는데, 건국훈장은 독립유공자 외에도 전직대통령이나 외국원수 등에게도 수여되고 있음을 고려하면 독립운동의 공적을 기리기 위한 훈장이 따로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하는 등 우리 민족의 독립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독립훈장을 수여할 수 있도록 별도의 규정을 신설하고,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에서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것으로 결정한 경우에는 서훈을 취소하도록 함(안 제11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신설>	제11조의2(독립훈장) 독립훈장은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하는 등 우리 민족의 독립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하며, 이를 5등급으로 한다.

서훈은 대한민국에 뚜렷한 공로가 있는 국민 또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수여하는 국가적 영예로,²⁾ 현행법상 12종류가 있으며, 무궁화대훈장을 제외한 각 훈장은 5등급으로 세분되어 있음.

《 대한민국 서훈의 종류 》

훈장	수여 대상	등급					포장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무궁화대훈장	대통령·우방원수 및 그 배우자	등급없음					-
건국훈장	건국 또는 국기를 공고히 한 유공자	대한민국장	대통령장	독립장	애국장	애족장	건국포장
국민훈장	정치·경제·사회·교육·학술분야 유공자	무궁화장	모란장	동백장	목련장	석류장	국민포장
무공훈장	전시(비상사태), 전투참여 유공자	태극	을지	충무	화랑	인헌	무공포장
근정훈장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으로서 직무 정려자	청조	황조	홍조	녹조	옥조	근정포장
보국훈장	국가안전보장 유공자	통일장	국선장	천수장	삼일장	광복장	보국포장 예비군포장
수교훈장	국권 신장, 우방과의 친선 유공자	광화대장 광화장	홍인장	송례장	창의장	숙정장	수교포장
산업훈장	국가산업발전 유공자	금탑	은탑	동탑	철탑	석탑	산업포장
새마을훈장	새마을 운동 유공자	자립장	자조장	협동장	근면장	노력장	새마을포장
문화훈장	문화예술발전 유공자	금관	은관	보관	옥관	화관	문화포장
체육훈장	체육발전 유공자	청룡장	맹호장	거상장	백마장	기린장	체육포장
과학기술훈장	과학기술발전 유공자	창조장	혁신장	웅비장	도약장	진보장	과학기술포장

※ 자료: 행정안전부

2) 「상훈법」 제2조(서훈의 원칙) 대한민국 훈장(勳章) 및 포장(褒章)은 대한민국 국민이나 우방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에 뚜렷한 공적(功績)을 세운 사람에게 수여한다.

‘건국훈장’은 1949년 「건국공로훈장령」에 따라 도입되었으며, 현행법은 “대한민국의 건국 또는 기초 확립에 이바지한 공로가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도 시행 초기에는 주로 국가 체제 확립에 기여한 인사에게 포상한 반면³⁾ 현재는 수훈자의 대부분이 독립유공자⁴⁾인바, 이는 독립운동이 대한민국 건국의 핵심적 기반이라는 인식이 상훈 제도에 반영된 결과로 보임.⁵⁾

《 최근 3년간('22~'24) 건국훈·포장 수훈자 중 독립유공자 비율 》

(단위: 명)

구분	등급	수훈자			수훈자 중 독립유공자 비중
		합계	독립유공자	기타	
건국훈장	대한민국장	-	-	-	-
	대통령장	-	-	-	-
	독립장	-	-	-	-
	애국장	66	66	-	100%
	애족장	234	234	-	100%
	소계	300	300	-	100%
건국포장	-	123	92	31*	74.8%
계	-	423	392	31	92.7%

* 4.19혁명 유공자

※ 자료: 행정안전부

3) 건국공로훈장의 최초 수훈자는 이승만 대통령과 이시영 부통령이었으며, 이후 호머 헐버트, 어니스트 베델, 프레데릭 브라운 해리스 등 외국인에게도 수여되었음. 6·25전쟁 당시 대한민국의 방위에 기여한 더글라스 맥아더, 제임스 밴 플리트 등의 외국인에게도 훈장이 수여된 바 있음.

4) 독립유공자(「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1. 순국선열: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하다가 그 반대나 항거로 인하여 순국한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

2. 애국지사: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조(예우의 기본 이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대한민국은 독립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바탕으로 이룩된 것이므로 이러한 희생과 공헌이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숭고한 애국정신의 귀감으로서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그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여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보장되도록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정부 수립 이후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인정된 독립유공자가 2만 명에 미치지 못하며, 자료 부족 등으로 독립운동가의 상당수가 포상에서 누락되고 있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⁶⁾

이에, 개정안은 건국훈장과 구별되는 ‘독립훈장’을 신설하고, 독립훈장 수훈자에 대해서는 현행법 제8조제1항제2호(국가안전에 관한 죄)에 해당하여도 서훈이 취소되지 않도록 하는 특례를 도입하려는 것으로, 이는 정치적·이념적 대립과 무관하게 독립운동의 역사적 가치와 공적을 독자적으로 평가하려는 취지로 이해됨.⁷⁾

다만, 개정안의 논의 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첫째, 현행 상훈제도 체계 하에서 ‘독립’과 ‘건국’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임.

「대한민국 헌법」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그리고 다수의 연구에서는 3·1운동, 임시정부 수립, 해방,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이르는 일련의 역사를 하나의 연속된 과정으로 해석하며, 독립과 건국을 불가분의 관계로 보고 있음.⁹⁾

6) “독립훈장 신설 촉구 시민 대장정 나선다…‘5만여명 서훈 누락’”, 한겨레, 2025.6.9.

<https://www.hani.co.kr/arti/area/honam/1201813.html>

7)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의 상훈법 개정안 ‘독립운동에 진보·보수는 따로 없다.’”, 일요저널, 2025.8.14.

<https://www.ilyo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43784>

8) 「대한민국헌법」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후략)

9) 국회입법조사처, 「대한민국 헌법의 기원과 국가적 연속성」(이슈와 논점), 2019.

최호동, “헌법 전문상 ‘임시정부 법통’의 의미 재조명”, 『아세아연구』 제67권 4호, 2024, p.173.

이러한 인식은 상훈 제도에도 반영되어, 최근 3년간 서훈된 300건의 건국훈장이 모두 독립유공자에게 수여되었음.

따라서 별도의 독립훈장이 신설될 경우, 기존 건국훈장의 기능과 영예성이 약화되고, 훈종 간 수여 대상의 중첩 등으로 인한 제도적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둘째, 독립훈장 수훈자에 대한 서훈취소 특례조항¹⁰⁾은 현행 「상훈법」 제8조의 취지와 상충될 소지가 있어 보임.

현행법은 모든 훈종의 수훈자에 대하여,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지거나,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범하였거나, 사형·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금고형이 확정된 경우, 서훈이 자동으로 취소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서훈의 영예성과 수훈자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보임.

그런데, 개정안은 다른 훈종과 달리 독립훈장에 대해서만 국가안전에 관한 범죄에 따른 서훈 취소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어, 동일 기준이 적용되는 다른 상훈과의 형평성 및 상훈 제도의 일관성 측면에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

10) 서훈취소 특례조항(개정안 제8조 단서: 독립훈장을 받은 사람은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상훈법」 제8조(서훈의 취소 등)

①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서훈을 취소하고, 훈장 또는 포장과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물건 및 금전을 환수한다.

1.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형을 받았거나 적대지역(敵對地域)으로 도피한 경우

3.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결론적으로, 독립훈장 및 관련 특례조항의 신설은 국가의 정체성, 상훈 제도의 신뢰성·형평성·일관성, 국민적 합의 형성, 사회적 파급효과 등 다양한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행정안전부는 독립훈장 신설 시 기존 건국훈장과 대상자가 중첩되고 과도한 세분화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국가보훈부는 현행 제도상 이미 독립유공자에게 건국훈장이 수여되고 있으므로, 입법의 실익, 국가 정체성, 국민감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

2. 친일반민족행위자에 대한 서훈 취소

개정안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이하 “반민족규명법”）」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것으로 결정된 경우를 서훈 취소 사유에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제4호 신설).¹¹⁾

현행	개정안
제8조(서훈의 취소 등) ①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서훈을 취소하고, 훈장 또는 포장과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물건 및 금전을 환수한다. <단서 신설>	제8조(서훈의 취소 등) ① ----- ----- ----- ----- ----- . 다만, 독립훈장을 받은 사람은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 3. (생략) <u><신설></u>	1. ~ 3. (현행과 같음) 4.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에서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것으로 결정한 경우
② · ③ (생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11) 「상훈법」 제8조(서훈의 취소 등) ①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서훈을 취소하고, 훈장 또는 포장과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물건 및 금전을 환수한다.

1.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형을 받았거나 적대지역(敵對地域)으로 도피한 경우

3.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헌행법은 대한민국에 뚜렷한 공적을 세운 사람에 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와 대통령의 결정¹²⁾이라는 엄격한 절차를 거쳐 영전을 수여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국가에 대한 국민적 자긍심을 고취하고 국가 통합의 가치를 제시하는 서훈의 영예성 제고에 기여함.

그런데, 그동안 일부 수훈자에 대해 친일반민족행위 가담 여부가 문제되어 서훈 유지의 적절성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제기된 바 있음.¹³⁾

이에 개정안은 「반민족규명법」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친일반민족행위를 하였다고 결정한 경우¹⁴⁾를 서훈 취소 사유로 명시함으로써, 국가적 가치에 기반한 국민 통합이라는 서훈의 의의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친일반민족행위자에 대한 서훈 취소’는, 독립운동의 공적으로 서훈을 받은 후 해당 인물이 친일반민족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진

12) 「대한민국헌법」 제80조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훈장 기타의 영전을 수여한다.
제89조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8. 영전수여

「상훈법」 제7조(서훈의 확정)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조에 따라 서훈이 추천된 경우에는 서훈에 관한 의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은 제1항에 따른 서훈에 관한 의안에 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서훈 대상자를 결정한다.

13) “친일파 39명 서훈 유지… 후손도 혜택”, 국민일보, 2025.9.16.

https://www.kmib.co.kr/article/view_amp.asp?arcid=1758012370

14)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3조(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의 설치) 친일반민족행위의 진상규명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위원회의 업무 등)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친일반민족행위 조사대상자(이하 “조사대상자”라 한다)의 선정

2. ~ 4. (생략)

5.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조사대상자의 친일반민족행위의 결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진상규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경우, 현행법 제8조제1항제1호(서훈의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에 근거하여 서훈 취소가 가능하며,¹⁵⁾ 1996년 이후 독립유공자 중 친일반민족행위를 이유로 26건의 서훈이 취소된 바 있음.¹⁶⁾

반면, 독립유공과 관련 없는 공적으로 무공훈장이나 근정훈장 등을 받은 경우에는,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해당 수훈자를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하더라도 서훈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수훈자가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것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훈종과 무관하게 모든 서훈을 취소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 계승을 천명하고 있는 「대한민국헌법」 전문¹⁷⁾의 정신과, 상훈 제도의 취지¹⁸⁾ 및 원칙(「상훈법」제2조)에 비추어 볼 때, 「반민족규명법」상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자에게 서훈을 수여하는 것은 민족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음.

15)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5.4.23., 2012두26920)도 서훈 공적과 서훈 후 밝혀진 사실을 전체적으로 평가했을 때 서훈 대상자의 행적을 서훈에 관한 공적으로 인정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상훈법 제8조 제1항 제1호의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서훈을 취소할 수 있다고 판시함.

16) 자세한 현황은 참고자료 참조

17)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18) “서훈은 단순히 서훈대상자 본인에 대한 수혜적 행위로서의 성격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 뚜렷한 공적을 세운 사람에게 명예를 부여함으로써 국민 일반에 대하여 국가와 민족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 국가적 가치를 통합·제시하는 행위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 … 서훈취소 제도는 수여된 서훈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서훈의 영예성을 수호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서훈제도의 본질과 기능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2015.4.23. 선고 2012두26920 판결)

《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법률」상 친일반민족행위 》

1. 국권을 지키기 위하여 일본제국주의와 싸우는 부대를 공격하거나 공격을 명령한 행위
2. 국권을 회복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단체 또는 개인을 강제해산시키거나 감금·폭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단체 또는 개인의 활동을 방해한 행위
3. 독립운동 또는 항일운동에 참여한 자 및 그 가족을 살상·처형·학대 또는 체포하거나 이를 지시 또는 명령한 행위
4. 독립운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조직된 단체의 장 또는 간부로서 그 단체의 의사결정을 중심으로 수행하거나 그 활동을 주도한 행위
5. 밀정행위로 독립운동이나 항일운동을 저해한 행위
6. 을사조약·한일합병조약 등 국권을 침해한 조약을 체결 또는 조인하거나 이를 모의한 행위
7. 일제로부터 작위를 받거나 이를 계승한 행위. 다만, 이에 해당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작위를 거부·반납하거나 후에 독립운동에 적극 참여한 사람 등으로 제3조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결정한 사람은 예외로 한다.
8. 일본제국의회의 귀족원의원 또는 중의원으로 활동한 행위
9.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의장·고문 또는 참의로 활동한 행위
10. 일본제국주의 군대의 소위(少尉) 이상의 장교로서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행위
11. 학병·지원병·징병 또는 징용을 전국적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선전(宣傳) 또는 선동하거나 강요한 행위
12. 일본군을 위안할 목적으로 주도적으로 부녀자를 강제동원한 행위
13. 사회·문화 기관이나 단체를 통하여 일본제국주의의 내선융화 또는 황민화운동을 적극 주도함으로써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 및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행위
14. 일본제국주의의 전쟁수행을 돕기 위하여 군수품 제조업체를 운영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금품을 헌납한 행위
15. 판사·검사 또는 사법관리로서 무고한 우리민족 구성원을 감금·고문·학대하는 등 탄압에 적극 앞장선 행위
16. 고등문관 이상의 관리, 헌병 또는 경찰로서 무고한 우리민족 구성원을 감금·고문·학대하는 등 탄압에 적극 앞장선 행위
17. 일본제국주의의 통치기구의 주요 외곽단체의 장 또는 간부로서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 및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행위
18. 동양척식회사 또는 식산은행 등의 중앙 및 지방조직 간부로서 우리민족의 재산을 수탈하기 위한 의사결정을 중심으로 수행하거나 그 집행을 주도한 행위
19.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와 침략전쟁에 협력하여 포상 또는 훈공을 받은 자로서 일본제국주의에 현저히 협력한 행위
20. 일본제국주의와 일본인에 의한 민족문화의 파괴·말살과 문화유산의 훼손·반출에 적극 협력한 행위

참고로, 개정안과 유사한 취지의 김용만의원 대표발의 「상훈법 일부 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0350호)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중이므로, 개정안 논의 시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음.

행정안전부는 독립유공자가 친일행위를 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 현행법에 따라 거짓 공적에 의한 서훈 취소는 가능하며, 거짓 공적 여부와 관계없이 ‘친일행위’만을 이유로 서훈을 취소할 것인지는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는 입장임.

다만, 행정안전부는 「상훈법」이 상훈에 관한 일반법이므로, 친일행위와 같이 대상자가 특정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특별법을 통해 서훈 취소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는 입장임.¹⁹⁾

19) (유사사례)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상훈 박탈) 정부는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훈을 받은 자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오로지 5·18민주화운동을 진압한 것이 공로로 인정되어 받은 상훈은 「상훈법」 제8조에 따라 서훈을 취소하고, 훈장 등을 환수한다.

3. 기타 신설 규정

개정안은 공적심사 시 서훈대상자의 공적 내용 확인을 위해 실지조사 이행 노력 의무를 명시하고(안 제5조제3항 후단 신설), 서훈의 취소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서훈을 복원하고 훈장·포장과 환수한 물건·금전을 반환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서훈의 추천) ① · ② (생략) ③ 서훈의 추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적심사를 거쳐야 한다. <후단 신설>	제5조(서훈의 추천)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이 경우 서훈 대상자의 공적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지조사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서훈의 취소 등) ①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서훈을 취소하고, 훈장 또는 포장과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물건 및 금전을 환수한다. <단서 신설>	제8조(서훈의 취소 등) ① ----- ----- ----- ----- ----- ----. 다만, 독립훈장을 받은 사람은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 ③ (생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신설>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서훈의 취소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대통령령에 따라 서훈을 복원하고 훈장 또는 포장과 이와 관련하여 환수한 물건 및 금전을 반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훈의 취소 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중 “건국포장”을 “독립훈장(獨立勳章)·건국포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건국포장”을 “독립훈장·건국포장”으로 한다.	

가. 실지조사 이행 노력 의무 명시

개정안은 서훈대상자의 공적 내용 심사 과정에서 실지조사 이행 노력 의무를 명시하려는 것임.

현행 실무에서도 각 기관은 「정부포상 업무지침」에 따라 서훈 후보자의 공적에 관한 현장 확인, 관련 증빙서류 제출요구, 관계기관 조회 등 ‘실지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실지조사 이행 노력 의무’의 명문화는 심사의 신뢰성 제고 차원에서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임.

행정안전부는 공적내용에 대한 실지조사는 현재도 지침에 따라 각 기관에서 이행하고 있는 사항으로, 법률에 이행 노력 의무를 명시하려는 취지에 공감한다는 입장임.

나. 서훈 취소 사유 소멸 시 서훈 복원 및 환수물건 반환

개정안은 「상훈법」 제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서훈 취소’ 사유가 소멸한 경우, 서훈을 복원하고 환수된 물건·금전을 반환하도록 규정하려는 취지임.

서훈취소 결정은 국가기관의 행정처분으로, 처분을 받은 당사자는 행정소송 등 쟁송절차를 통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으며, 법원의 확정판결로 서훈취소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처분은 처분 시점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고,²⁰⁾ 이에 따라 서훈 복원 및 환수물 반환은 자동으로 이루어짐.

따라서, 서훈 취소 사유 소멸 시 서훈 복원 및 반환 의무를 명문화하는 조치는 실질적으로 새로운 권리구제 수단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지만, 판례에 따라 정립된 절차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제도의 적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측면이 있어 보임.

20) “행정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으나 나중에 그 행정처분이 행정쟁송절차에서 취소되었다면, 그 행정처분은 처분 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된다.” (대법원 2019.7.25. 선고 2017두55077 판결)

행정안전부는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서훈취소 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해당 취소 처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는 것이며, 서훈 복원은 그에 부수하여 당연히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법 개정의 실익이 크지 않다는 입장임.

다. 부칙

개정안 부칙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 및 제2호의 “건국포장”을 “독립훈장·건국포장”으로 변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의 시행 시, 상훈제도와 독립유공자 예우제도에 ‘독립훈장’이 신설되나, ‘독립포장’에 관한 별도의 조치는 마련되지 않음.

《 개정안 부칙에 따른 「독립유공자법」 변경 사항 》

현행	개정안
제4조(적용 대상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제4조(적용 대상자) (현행과 같음)
1. 순국선열: 일제의 국권침탈(國權侵奪)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하다가 그 반대나 항거로 인하여 순국한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	1. ----- ----- ----- ----- -----

현행	개정안
훈장(建國勳章)· <u>건국포장(建國褒章)</u>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	----- <u>독립훈장(獨立勳章)</u> · <u>건국포장(建國褒章)</u> ----- -----
2. 애국지사: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 <u>건국포장</u>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	2. ----- ----- ----- ----- ----- ----- <u>독립훈장·건국포장</u> ----- -----

현행 「상훈법」에 따르면, 포장은 훈장 다음 등급의 훈격으로 각 훈장에 대응하는 12종이 존재하며,²¹⁾ 독립유공자의 경우에도 그동안 구체적인 공적의 내용과 정도에 따라 건국훈장, 건국포장, 대통령표창이 차등적으로 수여되어 왔음.

그런데, 개정안에 따라 독립훈장만 신설될 경우, 독립유공자에 대한 서훈이 ‘독립훈장’과 ‘건국포장’으로 이원화되어, 독립훈장 제도의 신설 목적과 상훈 제도의 체계적 정합성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어 보임.

따라서 독립훈장 신설과 함께 ‘독립포장’ 신설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21) 「상훈법」 제19조(포장의 종류) 포장은 훈장에 다음가는 훈격(勳格)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건국포장, 2. 국민포장, 3. 무공포장, 4. 근정포장, 5. 보국포장, 6. 예비군포장, 7. 수교포장, 8. 산업포장, 9. 새마을포장, 10. 문화포장, 11. 체육포장, 12. 과학기술포장

문 의 처
02)6788-5338

참고

독립유공자 중 친일행위자 서훈취소 현황(총 26명)

○ '96. 12. 10. 취소 : 5명

연번	성명	서훈일	서훈내용	취소일자	취소사유
1	故 김희선	'80.08.14.	건국훈장독립장	'96.12.10.	총독으로부터 기념장 수상
2	故 장응진	'90.12.26.	건국훈장애족장	'96.12.10.	일제 황민화 교육에 앞장
3	故 정광조	'80.08.14.	건국포장	'96.12.10.	일제의 전쟁수행 지원
4	故 서 춘	'63.03.01.	대통령표창	'96.12.10.	총독부 기관지 주필 내선일체 찬양
5	故 박연서	'63.03.01.	대통령표창	'96.12.10.	친일 시국강연 등

○ '11. 4. 6. 취소 : 19명

연번	성명	서훈일	서훈내용	취소일자	취소사유
1	故 강영석	90.08.15.	건국훈장애족장	'11.04.06.	잡지에 친일글 다수 게재
2	故 김우현	90.08.15.	건국훈장애족장	'11.04.06.	각종 시국강연회에서 친일강연
3	故 김응순	93.08.15.	건국훈장애족장	'11.04.06.	강연회 연사로 징병 선전 선동
4	故 김홍량	77.12.13.	건국훈장독립장	'11.04.06.	임전보국단 평의원, 애국헌금 납부
5	故 남천우	90.12.26.	건국훈장애족장	'11.04.06.	일본기독교 조선교단 충남 교구장
6	故 박성행	90.12.26.	건국훈장애국장	'11.04.06.	내선일체 선전 등 각종 강연
7	故 박영희	90.12.26.	건국훈장애족장	'11.04.06.	心田개발 순회강연 실시
8	故 유재기	95.08.15.	건국훈장애족장	'11.04.06.	전쟁준비 동참 권유 글 게재 등
9	故 윤익선	62.03.01.	건국훈장독립장	'11.04.06.	집회에서 침략전쟁 협력 독려 등
10	故 윤치영	82.08.15.	건국포장	'11.04.06.	신문 등에 침략전쟁 찬양글 게재
11	故 이동락	90.12.26.	건국훈장애국장	'11.04.06.	친일전향단체 대동민우회 이사
12	故 이종욱	77.12.13.	건국훈장독립장	'11.04.06.	국방헌금 모집, 임전보국단 이사
13	故 이항발	90.12.26.	건국훈장애국장	'11.04.06.	사상전향자단체 대동민우회 검사장
14	故 임용길	90.12.26.	건국훈장애족장	'11.04.06.	신문에 친일논설 등 다수 게재
15	故 장지연	62.03.01.	건국훈장독립장	'11.04.06.	식민정책을 미화 글 다수 게재
16	故 차상명	90.12.26.	건국훈장애족장	'11.04.06.	일본군 무운장구 기원 법회 거행
17	故 최준모	90.12.26.	건국훈장애족장	'11.04.06.	황도정신 선양 강연회 실시
18	故 최지화	90.12.26.	건국훈장애족장	'11.04.06.	일제협력 시국강연회 연사
19	故 허영호	90.08.15.	건국훈장애족장	'11.04.06.	순회강연으로 일본 침략전쟁 선전

※ '친일진상규명위원회' 결정 친일행위자 : 4명(김응순, 이종욱, 임용길, 허영호)

※ 3명(김우현, 이항발, 허영호)은 소송제기 했으나, 15년 말, 모두 정부승소

○ '18. 2. 14. 취소 : 1명

연번	성명	서훈일	서훈내용	취소일자	취소사유
1	故 김성수	62.03.01	건국훈장대통령장	'18.02.14.	일본 침략전쟁 적극 협력

※ 소송제기로 '11.4.6 취소대상에서 제외, '17.4.13. 대법원 판결(정부 일부 승소, 김성수 친일행위 인정)

○ '19. 2. 20. 취소 : 1명

연번	성명	서훈일	서훈내용	취소일자	취소사유
1	故 김규환	90.12.26.	건국훈장애족장	'19.02.20.	이명(김이대)으로친일활동 확인

※ 자료 : 행정안전부